부산지방기상청 공고 제2026-14호

2026년 부산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부산지방기상청 공고 제2026-12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지방기상청장

1. 합격자 명단

○ 최종합격자

구분	직무분야	인원	합격자(응시번호)	성명
공무직근로자	시설물청소원	1	A-006	이 ○ ○

○ 예비합격자

구분	직무분야	순위	예비합격자(응시번호)	성명
공무직근로자	시설물청소원	1	A-003	김 ○ ○
		2	A-017	백 ○ ○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2. 서류제출

○ 제출기한: 2026. 10. 6.(화)까지 **※ 상세내용 별도 통보 예정**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접제출(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63번길 54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 제출서류**(서식에 자필 서명하여 원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가 공개되도록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통장사본 1부
- 사진(3cmX4cm) 1매 또는 증명사진 파일(ejbae00@korea.kr 제출)
- 공정채용 확인서 1부[서식 1]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서식 2]

3. 유의사항

-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 기타 문의는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051-718-0227)으로 연락

[서식1]

공정채용 확인서

본인은 부산지방기상청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인)

부산지방기상청장 귀하

[서식2]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_____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기상청장 귀하